



##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등급분류위원회 규정

제 정 2016. 09. 29.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사단법인스페셜올림픽코리아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35조에 따라 등급분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2조 (조직)** 본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위촉한 등급분류분야 전문가(의사, 심리치료사 등), 체육전문가로 구성 한다.

### 제3조 (기능)

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·연구하고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국제 발달장애인경기대회에서의 등급분류 규정과 별칙규정의 심의
2. 발달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, 스포츠의학 강습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
3. 발달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 규정의 출판
4.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등급분류 기록의 작성 및 관리
5. 등급분류요원의 교육 및 양성
6. 국제 등급분류 기구와의 협력 강화
7.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# 제4조 (구성)

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2인
3. 위원 12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2인 포함)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, 대표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.

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
### 제5조 (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

하지 않고 SOK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6조 (위원의 위촉)

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은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하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#### 제7조 (위원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,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#### 제8조 (분과위원회 설치)

① 본 위원회에는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# 제9조 (회의소집 및 정족수)
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.

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,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또한 의장이 된다.

③ 본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,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제10조 (의견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 또는 해당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경비 등의 지원)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참석수당, 활동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12조 (회의록) 간사는 본위원회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기록한 회의록은 본회 및 차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



**Special Olympics**  
Korea

**제13조 (준용)**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에 준한다.

**부 칙 (2016.9.29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